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21일, 임의자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2.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5. 2.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의자의원)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안 제23조는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상청장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수행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요건과 기상청장의 자격 부여 권한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격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경우 전문자격사로서의 기후변화과학교육

사에 대한 인식 및 역할이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23조제1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안 제23조의2와 안 제23조의3은 각각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지정 취소"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는 자격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이 부적합 자에 대한 자격의 취소 등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있어 법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그 밖에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적합한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동 법률은 2023년 10월 24일에 제정되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으로 동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기상

청장이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외부 양성기관 지정·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이와 같이 교육 및 양성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자체적인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 바, 개정사항 시행 후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안 제25조의2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명칭 사용금지 규정(안 제23조제5항)에 따라 그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로 공공기관 등의 기관 명칭에 있어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명칭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으로 인한 피해방지 예방에 있다고 보이는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피해를 일반인에게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해당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기후변화과학교육

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함.

반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취소의 경우 각각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정 등의 취소는 지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은 주어 예산지원여부 등이 변경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 대상자나 지정취소 대상기관에 대해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러한 절차를 청문절차로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